

2) 구비서류(「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가) 징계사유에 대한 구비서류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하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에 의한 서식과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신청)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 서식)

(2)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나이스 출력물)

(3) 확인서(교육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2호 서식)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혐의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 ·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 징계혐의자의 진술서, 문답서

(8) 징계등 사유가 법(「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다만, 수사 기관의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 제외)

※ 징계등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권자가 신속한 징계등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징계 위원회는 우선심사를 할 수 있음

나) 타기관의 통보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1)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조사한 사건

①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서

② 혐의자 ·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

①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② 공소장

③ 혐의자 · 관련자 ·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기타 타기관의 경우

① 징계혐의사실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